

# 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 주 문

---

---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윤성원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

---

성 명 : 윤성원

직 위 : 법관

## 탄핵소추의 사유

---

---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윤성원(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 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 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현(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 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하여, 1988.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겸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겸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연구법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겸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14.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의 직위를 겸임하게 되어 2016. 2. 직위에 대한 겸임이 해제되었다. 2018. 2.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어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 개입 (2018. 11. 14.자 임종현 공소장 139-145면)

1)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진당(이하 '통진당'이라고 함)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통진당 중앙당 및 각 시 도당을 관할하는 법원에 통진당 보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2014.

12. 22.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종필은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의 ‘법원의 의견을 받아보라’는 지시에 따라 임종헌에게 ‘통진당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임종헌은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차장 강형주, 피소추자 등과 협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일선 법원의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가압류 사건의 신청인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청이 선관위이고 이인복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인 점을 이용, 이인복 대법관에게 부탁하여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 과장 박세진 변호사로부터 위 가압류 사건 관련 선관위의 내부 검토자료 및 전체 사건현황 자료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내부검토작업과 일선 법원 담당판사들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는데 활용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소추자는 2014. 12. 22.경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전지원을 통해, 심의관 최우진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으로부터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한 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받아 정리한 후 그 자료를 통진당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최우진은 통진당 가압류 사건 쟁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관련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징수위탁은 유효한 집행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에 의할 수밖에 없고 국고귀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당이 당사자능력과 적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가의 해산정당에 대한 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진당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

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였다.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경우 민사상 보전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시도당의 독립된 결사체를 인정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이 시도당에도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능력 또는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해산된 정당의 청산절차가 예정되어있고 정당사무관리규칙상 잔여재산 신고 및 납부기한을 2월로 정하고 있는데 해산 즉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형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되거나 논의된 전례가 없었고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례 등도 없었으며 각 쟁점 관련 예상되는 상반된 견해들도 각각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결론이 가장 적합하다는 식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일부 사건 담당 법관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진당 예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방향의 검토의견을 통진당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 전달할 경우,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이 맞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담당 법관들은 검토의견을 반박하거나 그와 다르게 법리 등을 구성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전달한 검토의견을 따르게 되는 등 재판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담당 법관들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자료를 요청했다거나 신청인의 소송수행청인 중앙선관위 측에 위 검토 자료가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헌은 2014. 12. 23.경 최우진이 취합·정리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보고받고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전달할 것을 승인하였고, 피소추자와 전지원은 최우진에게 검토자료의 양식을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 양식이 아닌 출처 및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으로 변경하여 일선 법원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우진은 2014. 12. 23.경 중앙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전체 통진당 가압류 사건 현황자료, 전국 법관 배치표를 참고하여 전국 16개 법원 담당 법관들에게 전화하여 ‘일선 법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판연구관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정상적인 사법지원 차원에서 참고자료를 전달하려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검토’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피소추자는 여기에 가처분 신청취지 등을 추가한 자료를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인 이인복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인복은 이를 중앙선관위 소속 박세진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전지원도 박세진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여 각급 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통진당 예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종용, 2014. 12. 24.경 각급 선관위는 추가로 통진당 예금 채권에 대해 일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각급 관할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3)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어 상고법원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법지원실 심의관 최우진에게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 전달을 통하여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의 법률해석과 직업적 양심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보전처분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재판 개입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56-64면)

1) 임종헌과 양승태, 박병대를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고, 1심 재판 당시부터 심의관들로 하여금 재정신청,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1심 공판진행 상황,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전망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재판 경과와 그에 따른 사법부 대응책을 논의하고, 청와대 측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임종헌은 2015. 2. 경 청와대 측에서 법무비서관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기대하며 항소심 선고 전망을 물어오자,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심과는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을 박병대, 양승태에게 보고했다. 사법부 수뇌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여 항소심 선고 이후의 상황과 관련한 청와대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계획했다.

2) 임종헌은 2015. 2. 7. 경 정다주에게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 특히 공선법 유죄 선고되면 청와대와 여권 상고 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되, 사법부를 위해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다주는 2015. 2. 8. 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에게 보고하고, 임종헌은 이를 박병대, 양승태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원세훈 사건

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를 제공하고,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등 특정 재판의 절차 및 처리 방향을 청와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세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자(2015. 2. 9.) 청와대 측은 법무비서관등을 통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임종헌에게 전달하였다. 임종헌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는 상고심 재판 예상쟁점을 분석하고 각계의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향후 재판을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임종헌은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속히 선고하여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의 정치적 파급력과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고심 재판부 및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9. 사법지원실 심의관 박성준에게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상고심 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 및 그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박성준은 2015. 2. 9. 자 '국정원 선거개입(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피소추자(사법지원실장),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문건을 직접 양승태에게 대면 보고했다.



###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소추자 등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피소추자의 행위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행위 등으로 나뉘는바,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1) 피소추자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어 상고법원 도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자료를 전달하여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의 법률해석과 직업적 양심에 영향을 미쳐 해당 보전처분 재판에 개입하였다. 당시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서 법원행정처가 일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개별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전례가 없는 사건이므로 각 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2) 피소추자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관련 행위

피소추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동향을 살피고,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속히 선고하여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 기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의 정치적 파급력과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을 파악한 보고서를 직접 양승태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해 사건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 행위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법관의 독립, 법관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의 지위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중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여 임종현 등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금지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4. 탄핵의 정당성

###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법원행정처의 핵심 부서 등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동안 이른바 판사에서,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이들은,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어 나중에 고등부장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고 나아가 법원장, 대법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인 변호사들로 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윤성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